

쓰레기소각장유해여부판단및대책에관한청원건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75
의 결	제21회
년 월 일	(93. 7. 19)

제출년월일 : 93. 7. 16

제 출 자 : 사회산업위원회

청 원 요 지

- 오정구 삼정동 66-2번지에 건립중인 중동 쓰레기소각장에 발생하는 다이옥신, 수은카뮴 등 발암 물질에 대한
-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건임

1. 심사결과

- 청원일시 : 93. 6. 17.
- 청원자 :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-21 이 연 리
- 소개의원 : 김일삼 의원
- 회부일자 : 93. 6. 18.
- 청원심사
 - 일 시 : 93. 7. 15. 11:00
 - 장 소 : 사회산업위원회실
 - 참석위원수 : 10명 (*관계공무원 출석 : 청소과장)
 - 내 용 : 청원건을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키로 결정

2. 소개의원 청원취지요지 : 청원요지와 같음

3. 전문위원 검토 결과보고의 요지

-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 제거방법은 여러가지 시공방법이 있으며
- 다이옥신에 대한 기대농도는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측정기술이 부족한 실정으로
- 시설의 보완과 함께 시설 설치과정을 철저히 감독하여 완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에 송부키로 의결

6. 의견서 : 별 첨

의 건 서

청 원 전 명	중동 쓰레기소각장 유해여부 판단 및 대책에 관한 청원	
청 원 인	주소	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75-21
	성명	이 연 리
소 개 의 원	김 일 섭 의원	
의결 년월일	93. 7. 15. 11:00	
내 용	○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환경보호와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○ 중동지구 쓰레기 소각장시설을 함에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계획의 신뢰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. 사 회 산 업 위 원 회 위 원 장	

건축공사상주감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

의안번호	187
의 건	제21회
년 월 일	(93. 7. 19)

제출년월일 : 93. 6. 2

제 출 자 : 도시건설위원회

□ 조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건축공사 감리중 상주감리 대상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